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 신설〉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9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3
1. 조합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 규정	3
2.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	9
3. 기 타	12
※ 참고자료	14
1. 공정거래법 관련 법조문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연구개발·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

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임.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함.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예컨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합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고 함)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이러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조합등은 협의를 요청받은 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같은 조 제2항 신설 등)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조합의 협의요청권) ① 조합이나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적 계약은 조합등이 조합원(회원사)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단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7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서는 조합등의 업무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규정¹⁾하고 있음.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단체적 계약의 경우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이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합등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²⁾함.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제93조(업무)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그런데, 현행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조합등이 단체적 계약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즉,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³⁾가 폐지된 이후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이처럼 단체적 계약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 기인한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조합등이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인 조합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에 제40조의2를 신설하면서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나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단체적 계약) ①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5.7.1.] [법률 제7285호, 2004.12.31.]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

「(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구매의 증대) ①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장에서 조합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사업조합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할 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한편, 안 제40조의2제1항 중 “조합이나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을 (중략) 체결 시”라는 문안은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의 경우 조합에만 해당하는 조항이고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수행하는 단체적 계약의 경우 별도의 근거 조항이 현행법에 각각 있다는 점(제82조제1항제4호 및 제93조제1항제9호)을 감안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하겠음.

또한, 안 제40조의2제1항은 조합등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에서 이미 중소기업자를 정의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업자⁵⁾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40조의2제2항 후문 중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의 경우 같은 항 전문의 문안인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자”와 같이 인용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1항에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합이 단체적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되, 거래조건 협의의 상대방을 조합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보호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발기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⁶⁾가 있고, 외국에도 관련 입법사례가 없어 법 개정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은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부여되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조합등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부처의 신중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관계에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 요청(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⁷⁾,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6) 물가 상승·국민 피해, 해외로 거래선 대체, 기술혁신 유인 감소 등 중기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함.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를」 제22조의2⁹⁾ 등이 있음.

2.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적용 배제

안 제40조의2제3항은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¹⁰⁾과 단체행위 금지 규정(제51조제1항제1호)¹¹⁾의 적용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배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조합의 협의요청권) ③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과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체적 계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이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하여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과 단체행위 금지 규정(제5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조합이나 연합회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배제 시키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은 조합등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제40조제1항)과 단체행위 금지 규정(제5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체계상 제11조의2제1항에 안 제4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40조의2제3항 중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라는 문안은 “안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의 협의 요청 및 협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이 조합원의 거래상대방 기업과 협의

를 허용하는 것은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성담합¹²⁾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¹³⁾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 개정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조합등이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부처의 신중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기 타

한편, 안 제11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고 약칭하려는 것이나, 이러한 현행 제11조의2 또는 안 제11조의2에서 “공동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12) 가격담합, 출고조절, 입찰담합, 시장·고객분할 등.

13) 물가 상승·국민 피해, 해외로 거래선 대체, 기술혁신 유인 감소 등 중기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사업을</u>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 ----- -----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 ----- ----- ----- ----- -----.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공정거래법 관련 법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법률 제20712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